

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·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·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「군사법원법」(법률 제17367호, 2020. 6. 9. 공포, 2020. 12. 10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·복사 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·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·복사 시 피해자,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(안 제7조제 3항 신설)
-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·복사 시 신청인 등의 준수사항에 관하여

정함(안 제7조제4항제5호 신설, 같은 조 제5항)

4.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·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·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·복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비실명 처리”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4. “개인정보”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.

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재판장은 피해자,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서기에게 「군사법원법」 제64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서기는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.

제7조제4항(중전의 제3항)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7조제5

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며, 제7조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5. 제3항에 따라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3조(다른 규칙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③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 등(이하 “신청인 등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④ 서기는 신청인 등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,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·복사의 중지, 제한,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⑤ 제4항의 조치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서기가 속한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.

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.

④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제3항에 따라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

⑤ ----- 제4항

-----.

⑥ 제5항-----

-----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358